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222

발의연월일: 2021. 3. 30.

발 의 자:기동민·강훈식·김원이

노웅래 • 박용진 • 윤준병

임종성 · 임호선 · 조승래

한준호 · 홍기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응시연령을 정한 채용시험의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에게 응시연령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연장하게 하고있음.

제대군인이 사관학교 등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사관학교 설치법」,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상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임.

이에 제대군인이 입학연령 상한 연장을 적용받아 사관학교 등에 입학하여 졸업할 경우 소위 임용 최고연령(27세)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제대군인의 경우 소위 임용 최고연령을 상향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 써 소위 임용연령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으로서 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한 후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29세로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연령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하여 졸업 한 후 소위로 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임용연령 제한) ① 장교,			제15조(임용연령 제한) ①
준사관 및 부사관에 최초로 임			
용되는 사람의 최저연령과 최			
고연령은 다음과 같다.			
초임계급	최저연령	최고연령	
소위	20세	27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사관			②
이나 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			
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35세로			
할 수 있고, 박사학위과정을 수			
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			
연령은 29세로 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제대군인으로서 사관
			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
			사관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한
			후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
			<u>은 29세로 할 수 있다.</u>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